

KB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KB 장병내일준비적금
- **상품특징**: 병사봉급 한도 내에서 복무기간 동안 목돈마련을 원하는 병역 의무복무자 맞춤형 상품으로,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 우대이율 제공

2 거래 조건

구 분	내 용			
	■ 가입시점에 <u>아래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u>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1인 1계좌 제한)			
가입대상	①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②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쥐 원본 제출 ※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품가입 불가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 129 조의 2 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①, ②조건모두 충족하여도 가입 불가 ※ 주)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 복무중인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및 대체복무기관, 나라사랑포탈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 - 비대면 신규는 「온라인 가입자격검증서비스*」 통해 제출된 확인서 사용가능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에서 본인의 분산 식별자 (DID: Decentralized Identifiers)와 디지털증명서(VC: Verifiable Credentials) 사본을 제출해 상품 가입 자격을 검증하는 서비스			
	변역병 복무구분 및 의무경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대체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발급처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및 소속대체복무기관 사회복무포털			
	※ 현역병사와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 받지 않는 기타 의무복무자(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예술체육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는 가입대상이 아님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예금			

가입채널	■ 영업점, KB 스타뱅킹				
계약기간	■ 1개월 이상 ~ 24개월 이하(일 단위 만기일 지정) ※ 만기일은 고객의 전역예정일(또는 소집해제예정일)이며, 단축·연장 할 수 없음 ※ 복무기간이 24개월 이상인 대체복무요원은 최대 가입기간 24개월로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저축방법 및 저축금액	■ 초입금 최저금액은 0 원 이상, 2 회차 이후는 1,000 원 이상 원단위로, 고객이 설정한 은행별 비과세 저축한도 범위내에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30 만원 이하 금액을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저축 가능 ※ 단,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금융기관 합산 저축한도는 고객별 월 55 만원이며,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은행의 월 저축한도는 최고 30 만원까지 설정 및 입금 가능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 국민은행 분	홈페이지에 게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	8
기본이율	계약기간 1	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15개월 미만	15개월 이성	상~24개월
(세금공제 전, 2025.01.02 기준)	이 율	연 3.5%	연 4.0%	연 5	.0%
といとり.い1.いと 71正/	※ 기본이율은 변	변경될 수 있으니 가입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ł.	
	■ 우대이율: 최고 연 3.0%p (아래 항목별로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 적용) ※ 단, 모든 우대이율은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만기해지한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				
	구 분		제공조건		우대이율
	[1] 급여이체 실적	고객이 가입한 적금 계약	난기일 기준 전전월 말일까지 약기간(월 환산)의 2/3에 해당 3국민은행 입출금통장으로 날 10만원 이상인 경우	당하는	연 0.5%p
우대이율	[2] 주택청약 종합저축 계좌보유	-	일 말일을 기준으로, 고객이 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	장 포함)_	연 0.2%p
수네이탈 (세금공제 전, 2025.01.02 기준)	[3] 나라사랑 카드	적금 신규월 초일부터 만기일 기준 전전월 말일까지 KB국민나라사랑카드(체크) 이용실적이 ^{주4)} 1 회 이상 발생하고, 적금 만기일 기준 전전월 말일까지 KB국민나라사랑카드(체크)를 보유한 경우		연 0.5%p	
	[4] 기초생활 수급자	적금 만기일 기준 전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 '수급자증명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중지통지서 (중지사유:군입대)'를 영업점에 제출한 경우 ^{주5)}			연 3.0%p
	⇒ `21.10.1 부년 ⇒ 적금 계약기; 5 개월 이상(※ 주2) 급여이체 계약에 따; * 복무구분이 9	터 `22.4.30까지 급여이체 간(월 환산)의 2/3: 계약기간 소수점 이하 기간은 버림), 실적: 국군재정관리단을 통 른 급여성 선일자, 탑라인,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	P일은 `21.10.20, 만기일은 `22 실적이 5 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같이 6 개월인 경우 4 개월 이상, 계약기간이 18 개월인 경우 12 한 급여이체 실적. KB국민은행되 기업인터넷뱅킹 등에 의한 이체 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인 고객역 1 일부터 말일까지 건별 30 만원	우 우대이율 적 계약기간이 8 개월 이상 박 급여이체 또 실적 의 경우에는,	3개월인 경우

(적요에 '월급', '급여', '수당', '급료', '상여', '보너스', '봉급', '성과급', '보로금', '임금' 등 문구 포함) 입금도 실적 인정. 단, KB 국민은행 영업점 및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금건 제외, KB 국민은행 본인계좌에서 이체건 제외, 입금계좌 정보가 없는 이체건 제외

- ※ 주3) 충족사례: 적금 만기일이 `21.8.20인 경우
 - ⇒ `21.6.30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 계좌를 보유한 경우 우대이율 적용
- ※ 주4) 이용실적은 KB국민카드사에서 매입(매출반영)된 경우 인정
- ※ 주5) 기초생활수급자 우대이율은 적금의 만기 전전월말까지 영업점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필수]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서(KB장병내일준비적금 기초수급자 우대이율)에 동의한 경우 적용
- '나라사랑카드 우대이율'은 ① <u>적금 가입 시</u> [선택]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KB 장병내일 준비적금-나라사랑카드 우대이율) 동의(신규 이후 동의 여부 변경 불가) 및 ② <u>적금 만기 전전월말까지</u> KB 국민카드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전체 동의서'에 동의하고, 적용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최종이율 (세금공제 전, 2025.01.02 기준)

계약기간	1개월 이상~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24개월
최종이율	최저 연 3.5% ~	최저 연 4.0% ~	최저 연 5.0% ~
괴으시된	최고 연 6.5%	최고 연 7.0%	최고 연 8.0%

※ 최고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을 모두 적용할 때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만기이자 계산방법

(산출근거)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 입금금액 X 약정이율 X 일수(입금일 ~ 만기일 전일)/365



※ 예상 수취이자액 안내

- 월 10 만원씩 24 개월 납입시 세전 200,000 원 (최고금리 적용시, 세부사항 변동가능)
- 월 10 만원씩 24 개월 납입시 세전 125,000 원 (기본금리 적용시, 세부사항 변동가능)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단위: 연 %)

중도해지이율

(세금공제 전, 2025.01.02 기준)

	예치기간	이율
	1개월미만	0.1
	1개월이상 ~ 3개월미만	기본이율 X 5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1)
	3개월이상 ~ 6개월미만	기본이율 X 5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1)
	6개월이상 ~ 8개월미만	기본이율 X 6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2)
١	8개월이상 ~ 10개월미만	기본이율 X 7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2)
	10개월이상 ~ 11개월미만	기본이율 X 8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2)
	11개월이상	기본이율 X 90% X 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는 0.2)

- 1. 경과월수: 입금일 다음날로부터 해지월 입금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1개월 미만은 절상
- 2. 계약월수: 신규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월 신규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절상 ※ 단, 계약기간이 월단위인 경우 계약월수를 그대로 사용하며,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
- 3.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입금건별 중도해지이율 계산 산식〕 기본이율 X 예치기간별 적용률(50∼90%) X 경과월수/계약월수 중도해지이자 계산방법 기본이율 x **90%** x 경과월수/계약월수 (최저 0.2) (산출근거) 기본이율 x **80%** x 경과월수/계약월수 (최저 0.2) 기본이윸 x **70%** x 경과월수/계약월 (최저 0.2) 기본이율 x **60%** x 경과월수/계약월수 (최저 0.2) 기본이율 x**50%**x 기본이율 ×**50%**× 경과월수/계약월수 (최저 0.1) 경과월수/계약월수 (최저 0.1) 0.1[예치기간] 1개월 3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1개월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단위: 연%) 경과기간 이 율 만기후이율 만기후 1개월 이내 기본이율 X 50% (세금공제 전, 만기후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기본이율 X 30% 2025.01.02 기준) 만기후 3개월 초과 0.1 ※ 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 ■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제①항 및 제②항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9 제①항 및 제②항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 - 2026.12.31 까지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 비과세저축 한도변경 불가 (단. '25.1.1 까지 가입한 계좌는 1 회에 한하여 비과세저축 세제혜택 한도변경이 가능하며. '25.1.1 까지의 비과세저축 한도변경 이력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비과세저축 한도는 5만원 단위로 설정 (단, '25.1.1 까지 가입한 계좌는 기존에 설정한 비과세저축 한도 유지 가능) ■ 비과세 혜택은 만기계좌에만 제공하며,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하지 않음)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영업점 방문 및 KB 스타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단, KB 스타뱅킹을 통한 해지는 아래 ①, ②,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가능 ① 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로 제출된 '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로 정상전역^{주1)} 또는 지연전역주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조기전역, 복무변경(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신분전환(병↔간부),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약해지방법 대상자의 경우 불가 주 1) 'KB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일'과 '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의 전역(소집해제)일자'가 동일한 경우 주 2) '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의 전역(소집해제)일자'가 'KB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일'보다

늦은 날짜인 경우

	② KB 국민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보유		
	③ KB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해지		
	■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 시 중도해지 처		
재예치	■ 불가		
일부인출	■ 불가		
만기앞당김지급			
질권설정	■ 가능		
양도 및	■ 양도 불가		
당보 수 담보제공	■ 예금담보대출은 계좌잔액의 95%까지 가능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주1}, 가압류^{주2}, 질권^{주3})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 1) 압류: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주 2)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주 3) 질권설정: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자동이체	 ■ KB국민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나, 자동이체 신청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만기 1일전까지 자동이체처리가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이체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당행 계좌간 자동이체] 자동이체일이 적금의 만기일과 같거나 만기일 이후인 경우 만기월에 자동이체가 처리되지 않으므로 만기일 전일까지 직접 입금하거나 자동이체일을 만기일자 전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예시] ① 만기일 2023.12.25, 자동이체일 25일, ② 만기일 2023.12.25, 자동이체일 28일 ☎ 2023.12월 자동이체 처리불가(12월 24일까지 직접 입금하거나 자동이체일을 1~24일 중원하는 일자로 변경) ■ [다른 금융회사 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해당 금융회사의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이체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적금으로 입금될 수 있으며, 그 사이에월이 바뀐 경우 적금 익월분으로 입금처리되어 익월의 자동이체도 미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다른 금융회사 계좌를 통한 자동이체일이 28일이고 23.9.28~23.10.3 휴일인 경우 ☞ 9월분은 미납되고 2023.10.4에 10월분으로 입금되어 10월 자동이체건도 미처리(납입한도 초과) ■ [급여중앙공제] 국군재정관리단과의 협약에 의해 적금 만기 전월(전역일이 속한월의 전월)까지만 처리되므로, 적금 만기월에 납입을 원할 경우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 직접 입금하여야 합니다. 		
휴면예금 및 출연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 9 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 (국번없이 1397)"에 출연^{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주)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시 사용하지 않는 소액계좌를 잔고 이전/해지 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 이용 시 휴면계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여부	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주1)을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해당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해지요구서 주2와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 부담 없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1)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제17조 제3항),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제18조 제2항),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제19조 제1,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의 금지(제21조) 주2) 해지요구서: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사실을 포함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소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 3 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 사항	 ● 이 상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으며 양도가 불가합니다. ● 이 상품을 '25.1.1 까지 가입한 계좌는 1 회에 한하여 비과세저축 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25.1.1 까지의 비과세저축 한도변경 이력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의 신규일이 '25.1.2 이후인 계좌는 비과세저축 한도변경이 불가합니다. ● 이 상품의 비과세저축 한도는 5 만원 단위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단, 이 상품을 '25.1.1 까지 가입한 계좌는 기존에 설정한 비과세저축 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1% 이자지원금(舊재정지원금)

- ☞ <u>병역법 개정으로 '21.10.14 기준 만기일 도래 된 만기해지계좌부터 지급하며, '23.12.31 까지 입금분에</u>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 ※단 이 적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가능한 과세특례 전용 상품으로,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특례적용이 불가능한 가입자의 경우는 1% 이자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1% 이자지원금(購재정지원금) 지급 관련 문의는 국군재정관리단(☎02-3146-6544(6545)) 및 병무청(☎042-481-3043, 사회복무요원에 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1% 이자지원금 (盖 재정지원금)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 1% 이자지원금(舊재정지원금)은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이 적금 예금주로서 <u>아래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u> 하는 경우				
	① 만기계좌 ② 만기 해지시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 ^쥐 (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中 택1) 원본 제출 단, 비대면 해지 시에는 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로 제출된 '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로 전역일을 확인하며 이 경우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 원본 제출은 생략 가능				
지급대상	 주) 확인서 발급 복무중인(전역전), 또는 복무하였던(전역후)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및 대체복무기관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 복무사실확인서(대체복무요원 복무확인서)는 복무기간이 24 개월 이상인 대체복무요원만 만기해지시 제출가능 				
	변역병				
	발급처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및 소속대체복무기관 사회복무포털				
지급금액	■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납입금액 건 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p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 실제 예치일수: 입금일부터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임 ※ 입금금액 건 별로 원미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셋째 자리에서부터 버림) 후 합산하여 원미만 절사				
알아두실 사항	 중도해지 계좌는 1%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역일이 명기된 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中 택 1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1% 이자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 이자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고객님께서는 만기해지 할 때 반드시 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中 택 1 원본을 영업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지 후 서류제출하더라도 소급지급 불가) 단, 비대면 해지 시에는 온라인 자격검증서비스로 제출된 '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로 전역일을 확인하며, 이 경우에는 전역일이 명기된 확인서 원본 제출은 생략 가능합니다. 만기 해지 후 동 상품 재 가입 불가 (정부 지원금 중복 수혜 방지) 복무기간 단축・연장으로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자가 상이한 경우, 1% 이자지원금 지급기준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매칭지원금 지급기준 시점도 동일) *복무기간 단축시(만기일>전역일): 적금 만기일 이후 해지시 1% 이자지원금 지급 가능 				

복무기간 연장시(전역일>만기일): 연장된 전역일 이후 해지시 1% 이자지원금 지급 가능

- 1% 이자지원금은 국가(국방부, 병무청)에서 지급하는 자금으로, 국가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의 변경 및 개정 내용에 따라 지급대상, 지급금액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1% 이자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9 조의 2 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적금가입 · 추가납입 · 정부지원금(1% 이자지원금, 매칭지원금) 지급 및 비과세 적용 모두 불가합니다.

4 매칭지원금

- ☞ 병역법 개정으로 지급 시행일은 '22.1.1 이며, 시행일 이후 납입 당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 및 1% 이자지원금과는 달리, 만기해지시 은행에 제출한 수령희망계좌로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급관련 문의는 국군재정관리단(☎02-3146-6544(6545)) 및 병무청(☎042-481-3043, 사회복무요원에 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매칭지원금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사회복귀지원금입니다. ※ 매칭지원금은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급대상	■ 이 적금 예금주로서 「1% 이자지원금」조건과 동일합니다. ※ 단 지급방법은「1% 이자지원금」과는 달리 만기해지 후 복무구분에 따라 국방부(사회복무요원 外 대상자) 및 병무청(사회복무요원)에서 순차적으로 지급처리 (만기해지일의 다음월 중) 합니다.		
지급금액	■ 23 년도까지 납입분 : 적금 '납입건 별 금액'(A)에 '은행에서 정하는 이자소득'(B)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1% 이자지원금'(C)을 합산한 금액(A+B+C)에 관련 법령(병역법 시행령 제 158 조의 2 제 1 항 제 2 호)에서 정한 정부지원 비율*을 곱한 금액 *납입기준 시점에 따라 정부지원 비율이 상이함 (22 년도 납입건 : 33% / 23 년도 납입건 : 71%) ※ 입금금액 건 별로 원미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소수점 셋째 자리에서부터 버림) 후 합산하여 원미만 절사 ■ 24 년도 이후 납입분 : 적금 '납입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관련 법령(병역법 시행령 제 158 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한 정부지원 비율		
알아두실 사항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제한사항이「1% 이자지원금」과 동일하므로 1% 이자지원금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매칭지원금만 지급 불가합니다. 단, 2024 년도 이후 신규계좌의 경우 매칭지원금만 발생하므로 매칭지원금만 지급합니다. 매칭지원금은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자금으로, 국가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의 변경 및 개정 내용에 따라 지급대상, 지급금액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변경내용은 국방부 나라사랑포털 및 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병역법 시행령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29 조의 2 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매칭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매칭지원금의 지급은 만기해지 후 복무구분에 따라 국방부 또는 병무청에서 순차적으로 (만기해지일의 다음월 중)지급처리 합니다. 		

5 유의 사항

- 우대이율은 만기해지하는 경우에만 해당 계약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 이 적금을 예약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예약신규일(실제 적금의 신규일) 기준으로 고객의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 개월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예금신규가 불가합니다.
- 이 적금은 'KB 국민은행'과 '국방부(병무청)'간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 법 변경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 국군희망준비적금 계좌를 보유중인 고객도 이 적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적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이 불일치한 정상 전역자의 경우 반드시 적금 만기일 이후에 해지해야만 만기해지가 적용되며, 적금 만기일 전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가 적용됩니다.
 - ※ 충족사례: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실제 전역일 2024.03.14 / 적금 만기일 2024.03.21
 - ⇒ 2024.03.14 적금 해지시 중도해지 적용, 2024.03.21 적금 해지시 만기해지 적용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수신상품부(P)에서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999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kbstar.com),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